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9월 29일, 김달수 의원
상정일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18년 4월 12일 상정 및 심사,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주요내용	○ 자원봉사의 구체적 활동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 소감 등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함 (안 제10조제8호)
수정내용	○ 자원봉사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 증빙 서류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8조) ○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19조)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9월 29일, 김달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18년 4월 12일 상정 및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달수 의원)

가.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경력 발급, 보험가입 등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자원봉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의 구체적 활동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소감 등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8호).
- 나. 자원봉사를 수행한 공헌을 인정하고 관련서류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신승학)

※ 검토보고서 전문 [별첨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표현을 수정
- 보험가입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내용은 유지하고, 안전 교육에 관한 내용 추가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8조 중 “공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을 “경력을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경력 증빙 서류를” 로 수정하고,
-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안 제1항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항은 현행과 같이 수정함 [별첨2]

8. 첨부서류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 [별첨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달수 의원 등 40명이 발의하여 2017. 9. 29. 제출, 2017. 10. 11. 안전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I.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경력 발급, 보험가입 등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자원봉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의 구체적 활동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소감 등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8호).
- 나. 자원봉사를 수행한 공헌을 인정하고 관련서류를 발급하도록 함
(안 제18조).
- 다.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9조).

III.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제8호), 자원봉사 수행 인정범위를 ‘경력과 공헌’에서 ‘경력’을
삭제하고 ‘공헌’으로 포괄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인정범위를 넓혔으며
(안 제18조), 기존 보험가입 이외에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9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를,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위험에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 필요한 조치와 (제1항),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와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제2항 및 제3항),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항).

-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지원 근거에 의거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헌 인정과 안전교육 등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 안)제18조에서 ‘경력’을 삭제하고 ‘공헌’으로 포괄하면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
- 또한 동 개정안에서는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헌의 인정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관련서류를 요청한다고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검증절차 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해 행정기관의 공신력과 더불어 증명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한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안)제18조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증서의 발급이 지속 사항으로 수정되는 것이기에 소관부서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공인된 자원봉사인증기관인 ‘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는 ‘확인서’를,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VMS)에서는 ‘인증서’로 표현하는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도 각각 명칭을 달리하며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서 ‘인증서’라는 용어만을 확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제19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이런 취지와는 달리 안전교육 등 다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 개정안의 내용은 제3항으로 신설하여 삽입하는 것이 현행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2017. 8. 8 ~ 8. 14.)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대상이라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4월12일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가. 수정이유

-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표현을 수정
- 보험가입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내용은 유지하고, 안전 교육에 관한 내용 추가

나. 수정내용

- 안 제18조 중 “공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을 “경력을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경력 증빙 서류를” 로 수정함
-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안 제1항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항은 현행과 같이 수정함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 중 “공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을 “경력을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경력 증빙 서류를” 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안 제1항과 같이 하고, 안 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공헌인정 등) 도지사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공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공헌인정 등) ----- ----- ----- -----경력을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경력 증빙서류를 ----- ----- ----- -----.
제19조(보험가입) ① 자원봉사단체장 및 센터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u>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u>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u>(현행과 같음)</u>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u>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원봉사 활동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소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원 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제10조제9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력인정 등)”을 “(공헌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를 “경력을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경력 증빙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우수자원봉사자"이라 함은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u>도지사</u> 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생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u>경기도</u> <u>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 7. (현행과 같음)
제4조(<u>지방자치단체의 책무</u>) (생략)	제4조(<u>도지사의 책무</u>) (현행과 같음)
제5조(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생략)	제5조(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다만,</u>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제10조(센터의 사업) ----- -----. 1. ~ 7. (현행과 같음)

8.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9. 그밖에 도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8조(경력인정 등) 도지사는 자원
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
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
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
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험가입) ① 자원봉사단체
장 및 센터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
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8. 자원봉사 활동내용, 자원봉사자
의 활동소감 등의 정보가 포함
된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9. 그 밖에-----

제18조(공헌인정 등) -----

---경력을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경력 증빙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